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91
----------	-------

발의연월일 : 2026. 4. 22.

발 의 자 : 권향엽 · 이훈기 · 김남근
김 윤 · 임미애 · 김문수
전진숙 · 전종덕 · 장종태
문금주 · 김준환 · 이광희
박용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서훈 취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

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실규명기관에 의하여 진실규명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실규명기관에 의하여 진실규명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